

사 업 연 도	· ~ · · ·	소득금액조정합계표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[illegible]

작성 방법

1.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. 다만,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2. ①,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계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,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적습니다.
 -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‘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’으로 ①란에 적고,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‘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(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)’과 ‘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(배분한도 초과결손금)’으로 구분하여 ④란에 적습니다.
3. ③,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06조에 따른 배당, 상여, 유보, 기타소득, 기타 사외유출, 기타 및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유보, 출자의 증가, 이전소득 배당으로 구분하여 적고, 손금의 경우 유보, 기타, 출자의 증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 - 가. ③,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06조에 따른 상여 100, 배당 200, 기타 소득 300, 유보 400, 기타 사외유출 500, 기타 600으로 적으며,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~제25조에 의한 임시유보 700, 출자의 증가 820, 이전소득 배당 810으로 적으며,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(△유보) 100, 기타 200, 출자의 증가(△출자의 증가) 300으로 적습니다.
 - 나.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③, ⑥처분란에 ‘기타’로 적습니다.
4.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[별지 제3호서식]상의 ㉞, ㉟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.
5.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(원화재무제표)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,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.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.
2.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 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금액만을 별도로 적습니다. 이 경우 하단에는 반드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 영업손익조정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.
 - 가. 「법인세법」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
 - 나. 「법인세법」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
 - 다. 「법인세법」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
 - 라. 「법인세법」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
 - 마. 「법인세법」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
 - 바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
 - 사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
- ※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금액이 2,000,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1,000,000원인 경우에는 ② 금액란에 2,000,000원을 적고,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1,000,000원을 적습니다.
3. ⑤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.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① 과목란에 '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'으로 적고, ④ 처분란에는 '기타'로 적습니다.
5.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,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그 밖의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.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.
2.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 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금액만을 별도로 적습니다. 이 경우 하단에는 반드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 영업손익조정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.
 - 가. 「법인세법」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
 - 나. 「법인세법」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
 - 다. 「법인세법」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
 - 라. 「법인세법」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
 - 마. 「법인세법」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
 - 바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
 - 사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
- ※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관련 조정금액이 3,000,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2,000,000원인 경우에는 ② 금액란에 3,000,000원을 적고,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2,000,000원을 적습니다.
3. ⑤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.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① 과목란에 '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(지분가액 한도 내 결손금)'과 '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(배분한도 초과결손금)'으로 구분하여 적고, ④ 처분란에는 '기타'로 적습니다.
5.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,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.